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례시에 인정되는 사무 특례 추가〉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9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참고] 특례시에 인정되는 사무특례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3.
3. 회부연월일 : 2024.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시의 사무특례로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는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되었음.

그런데, 이양 권한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준용되지 못하여 특례시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를 포함하여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에서도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3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특례시의 사무 특례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¹⁾를 규정함으로써 특례시가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3호).

현행	개정안
제59조(특례시의 사무 특례)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 12. (생략)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	제59조(특례시의 사무 특례) -----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 ----- ----- ----- -----제54조, 제57조 및 제59조의2에----- ----- -----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약칭하고²⁾, 특례시에 부여하는 사무 특례를 규정³⁾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특례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⁴⁾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음.

<특례시 현황>

(단위: 명, km²)

연번	도시명	주민 수	면적
1	경기도 수원시	1,249,349	121.09
2	경기도 용인시	1,100,376	591.23
3	경기도 고양시	1,095,084	268.11
4	경상남도 창원시	1,038,830	749.03

* 경기도 화성시는 2023. 12. 31. 기준으로 주민 수 100만을 초과하였으나, 2024. 12. 31.까지 이를 유지해야만 2025. 1. 1.부터 특례시로 지정됨.

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3) 특례시에 부여되는 사무특례는 [참고]에 별도로 표시함.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6의2.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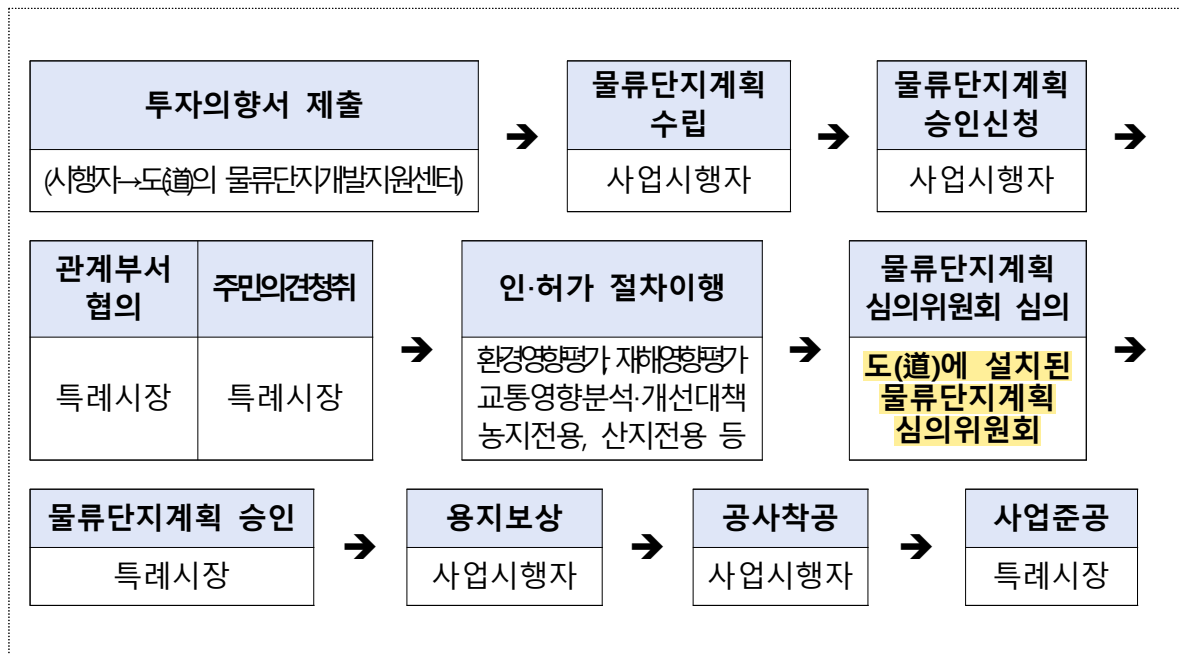
6의3. “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특례시에 위임된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 등의 업무>

연번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1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3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4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5	물류단지개발지침 작성 시 의견제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6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7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8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9	조합설립의 인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10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11	공공시설의 설치 및 기존 시설의 보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12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13	물류단지 등의 건설공사 착수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14	물류단지의 재정비사업의 시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15	물류단지의 지정·승인·인가의 취소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16	물류단지의 관리기관 구성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17	물류단지의 관리지침 작성·변경 시 협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
18	물류단지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에 대한 권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현재 특례시의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의 절차를 준용하
여 ①사업시행자의 투자의향서 제출, ②실수요검증 및 물류단지계획의
수립·승인신청, ③관계부서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 ④인·허가 절차 이행,
⑤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⑥물류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 준공인
가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음.

<물류단지 개발사업 업무절차(「산단절차간소화법」 준용)>



※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에 따르면,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준
공인가는 특례시가 수행하고 있으나, 특례시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
회가 설치되지 않아, 물류단지계획에 대한 심의는 도(道)의 물류단지계
획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짐.

이에 개정안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특레시에 설치함으로써 물류단지계획에 대한 심의가 특레시의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⁵⁾.

<물류단지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운영 중	실수요검증통과	건설 중
물류단지	28	18	14
특레시 소재 물류단지*	0	5	2

*검증통과: 용인양지단지, 용인단지, 용인스마트단지, 용인NS스마트단지, 용인서남부단지
건설중: 용인포곡스마트단지, 용인국제물류4.0단지

※자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개정안과 같이 특레시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지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현행법의 목적⁶⁾과 특레 사무의 성격·특레시로 이관될 경우 수반되는 효과 및 기존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5)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상정 요건을 갖추었으나 도의 심의 운영여건에 따라 심의 상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방침>

- 월 1회 개최, 회별 2건 심의, 지자체별 1건/회 상정
- 특정시·군의 연속 상정은 어려움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현행법 제59조는 특례시에게 부여되는 ‘사무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계획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으로, 이미 특례시가 수행하는 물류단지의 지정·개발 등의 절차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특례시에게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권한’ 자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례시의 시장은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함)에 대한 지정권자에 해당하는데⁷⁾,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도(道)에 설치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심의를 수행⁸⁾하고 있으므로, 특례시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또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단절차 간소화법」 제6조⁹⁾를 특례시에게 부여하는 사무특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¹⁰⁾.

문 의 처
02)6788-5334

9)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10) 참고로, 정부에서 입법예고 중('24. 10. 11~'24. 11. 20)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특례시에 부여하고 있음.

[참고] 특례시에 인정되는 사무특례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5.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6.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9.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가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2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가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가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 같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보고 등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 업무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

리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한정한다]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업무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